

- 장기 투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 -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주식 자투자신탁



투자설명서



KDB ASSET MANAGEMENT



이 투자설명서는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주식 자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주식 자투자신탁

투자신탁명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주식 자투자신탁
자산운용회사명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해외위탁자산 운용회사명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명 및 상담 가능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우증권 (☎ 1588-3322, www.bestez.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산업은행 (☎ 1588-1500, www.kdb.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 HMC투자증권 (☎ 02-3787-2114, www.hmcib.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키움증권 (☎ 1544-9100, www.kiwoom.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리딩투자증권 (☎ 02-2009-7000, www.leadingkorea.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6-1 • 한국투자증권 (☎ 1544-5000, www.truefriend.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하나은행 (☎ 1588-1111, www.hanabank.co.kr)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 교보증권 (☎ 02-3771-9399, www.iprovest.com)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국민은행 (☎ 02-1588-9999, www.kbstar.co.kr)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년 9월 22일
투자설명서 비치·공시 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 소	<p>판매회사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p> <p>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dbasset.co.kr)</p> <p>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p>

금융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 설명서):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 3. 수수료·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2부 투자신탁 상세정보: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 4.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펀드 용어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5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펀드의 투자전략·투자대상 및 투자위험 등에 대해 알고 싶다면?

-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종류,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투자 대상, 주요 투자위험, 자산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펀드 용어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7~8쪽)

- 1. 명칭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주식 자투자신탁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67432*)
- 2. 펀드존속기간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
- 3. 종류 증권투자신탁,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 4. 자산운용회사 산은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8~13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편입된 전세계 인프라 자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70%이상 투자하여 비교지수 수익 추종 추구
2. 주요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인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주식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재산의 70%이상을 투자 - 외화자산 중 미달러 환산평가액의 90% 수준에 대해서만 환헷지를 하며 USD 대비 이중통화에 대해서는 환 open
3. 주요투자위험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및 환율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투자설명서 본문(19~20쪽)을 참조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 . 따라서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면서도 보유 유가증권 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
5.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www.kdbasset.co.kr)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김상훈	37세	팀장	26개	4,867억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 금융자산운용(하나증권 8년)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투자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팀을 총괄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단위: %)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투자신탁	연 -16.66%	-	-	-	연 -9.82%
비교지수	연 -18.02%	-	-	-	연 -10.01%

※ 비교지수: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 90% + Call × 10%**

III 매입·환매 관련정보(☞본문 13~18 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종 류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수익증권 판매기준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제한 없음	Wrap계좌를 보유한 자,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간접투자기구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00%	-	-	
	환매수수료¹⁾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기준)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70%	연 0.70%	연 0.70%
		판매회사보수	연 0.90%	연 1.90%	별도 징구
		기타보수	연 0.1025%	연 0.1025%	연 0.1025%
		보수합계	연 1.7025%	연 2.7025%	연 0.8025%
	기타비용	연 0.02%	연 0.02%	연 0.02%	
	총보수·비용비율²⁾	연 1.7225%	연 2.7225%	연 0.8225%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2. 과세 :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거주자인 개인에 한하여 2007년 6월1일부터 2009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대하여 **소득세 등(2007.6.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 (오전9시~오후 5시) 중 **매입 또는 환매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 후
매 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 를 적용
환 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 (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평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상기 투자설명서표지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환율변동위험 포함**)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 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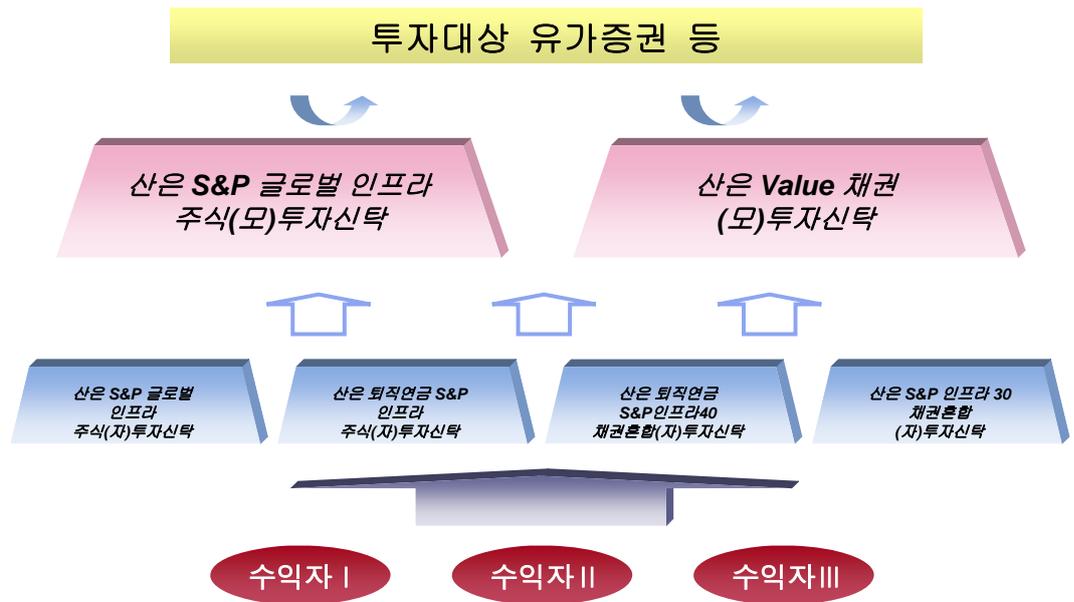
- 1. 명 칭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주식 자투자신탁 (펀드코드: 67432)
- 2.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3. 분 류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종류형, 모자형/자투자신탁

■ 종류형 투자신탁의 구조

종류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별 가입조건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제한 없음	일임형종합관리계좌를 보유한자,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간접투자기구

※ 각 종류간에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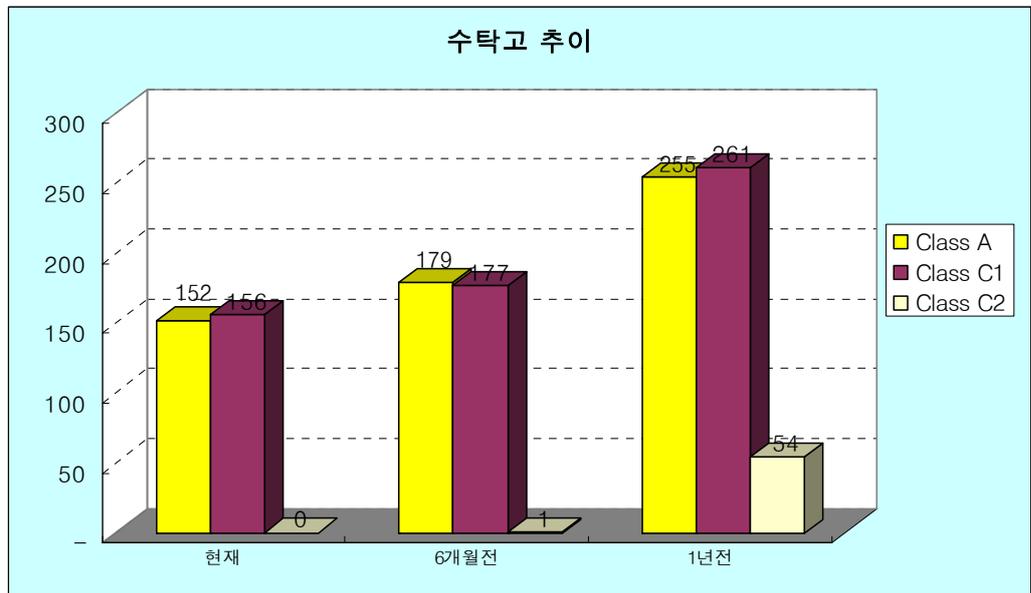
■ 모자형 투자신탁의 구조



- 4. 자산운용회사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2008.5.2 설정
2007.5.30 약관변경 - 종류C2 가입자격 대상에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추가

구분	현재 20080922	6개월전 20080322	1년전 20070922
수탁고금액(전체)	307.80	356.74	569.87
수탁고증가율(전체)	-13.72	-37.40	0.00
수탁고금액(종류 A)	151.56	179.45	254.68
수탁고금액(종류 C1)	156.06	176.64	261.29
수탁고금액(종류 C2)	0.17	0.64	53.91

(단위:억원,%)



7. 해지 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전세계 인프라 자산 관련 상장주식에 신탁재산의 70% 이상 투자하여 비교지수 수익 추종 추구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이상을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편입된 글로벌 인프라자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함으로써 비교지수의 수익을 추종합니다. 또한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수준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헷지할 예정이며 그 이외의 거래·보유 통화는 환헷지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 90% + Call × 10%**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도 환매시 또는 편입자산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구체적인 주요 투자대상
①	인프라 주식 모투자신탁	70% 이상	해외주식에의 투자 : 60% 이상 채권/어음에의 투자 : 40% 이하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운용할 수 있다.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은 '제5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주요위험은 투자원본 손실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등이 있습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펀드의 수익구조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u>주식 모투자신탁 등에</u>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u>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섹터(Sector)에 투자하므로 전체시장 투자 대비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u>
추적오차 위험	이 펀드는 목표로 하는 Index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운용되는 Passive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펀드의 설정규모 및 투자 제반 여건 등의 요인으로 인덱스가 완전히 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벤치마크 Index와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이상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헷지합니다. 단, 이종통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달러화 헷지시에도 만기 불일치로 인해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원달러환율 선물계약의 만기는 투자신탁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기간을 위한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때의 시장 환율 및 선도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환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p>투자수익 부분은 투자신탁 설정단계에서는 환 위험 헤지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어 국내 통화로 환전되는 시점에서 환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p> <p>당 펀드가 추가형/개방형으로 설계되어 환매 및 추가설정에 따라 소액의 입출금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환위험 헤징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헤징 가능 시점에 따라 일정기간 환위험 헤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p>
--	--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은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운용에 의한 손익은 모두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여타 자산보다 변동성이 높은 전세계 인프라 자산 관련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5등급의 위험 중 1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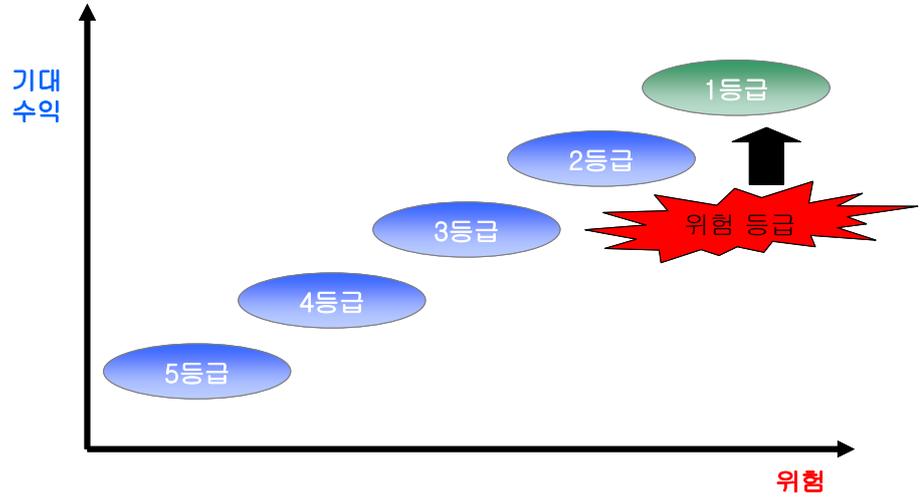
따라서 주가상승에 따른 높은 자본이득을 추구하면서도 보유 유가증권가치하락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높은 투자위험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전체 포트폴리오 중 이러한 유형의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는 일부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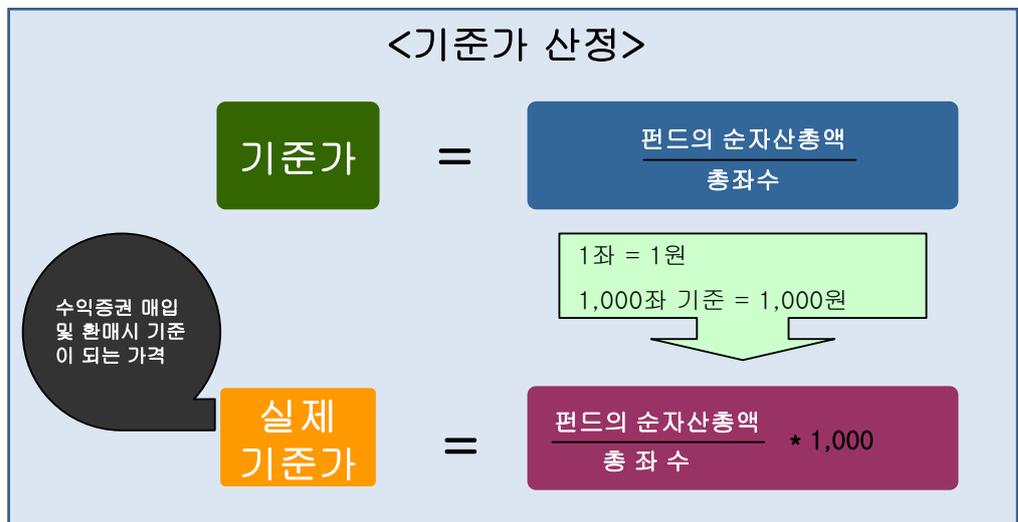
위험 등급	위험 수준 내용	자산운용사의 운용중인 투자신탁 상품(예시)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 등에 8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예:주식형)
		(상품예)산은S&P글로벌클린에너지주식자투자신탁 산은삼바브라질주식자투자신탁
2등급	높은 위험	주식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예:주식혼합형, 인덱스형)
		(상품예)산은대표기업지수시스템혼합형투자신탁
3등급	중간위험	주식 등에 60% 이하로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장외파생 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경우 (예: 주가·지수연동 장외파생상품, 채권혼합형, 투기등급 채권형)
		상품예)산은하이디배당혼합투자회사제1호 산은안정혼합투자신탁제1호

4등급	낮은 위험	채권 및 어음 등에 주로 투자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특별자산·실물자산펀드(신용 보강 여부에 따라 조정 가능) 등 (예: 채권형, 부동산, 특별자산, 원금보존추구의 장외파생상품) (상품예)산은ValuePlus채권투자신탁제1호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 현금성 자산위주로 운용하는 경우 (예 : MMF 등) (상품예)산은국공채MMF투자신탁제1호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상기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산은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www.kdbasset.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6. 운용전문인력

구분	내용
성명	김상훈
직위	해외투자팀 팀장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사항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금융자산운용(하나증권 8년)

※상기 운용역은 당 펀드의 책임 운용인력입니다.

책임 운용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1.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7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연도	최근1년 2007.09.23 ~ 2008.09.22	최근3년 (*YY.MM.DD~*YY.MM.DD)	설정일 이후 2007.04.10 ~ 2008.09.22
투자신탁(전체)	-16.66		-9.82
투자신탁(종류 A)	-16.29		-9.70
투자신탁(종류 C1)	-17.15		-10.30
투자신탁(종류 C2)	-15.38		-9.26
비교지수	-18.02		-10.01



※ 비교지수 =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 90% + Call × 10%

※ 상기 투자 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연도	최근1년차 2007.09.23 ~ 2008.09.22	최근2년차 2007.04.10 ~ 2007.09.22	최근3년차 (*YY.MM.DD~*YY.MM.DD)
투자신탁(전체)	-16.66		
투자신탁(종류 A)	-16.29		
투자신탁(종류 C1)	-17.15		
투자신탁(종류 C2)	-15.38		
비교지수	-18.02		



※ 비교지수 =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 90% + Call × 10%

※ 상기 투자 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비고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1회	신탁재산편입
선취 판매 수수료	종류 A : 납입금액의 1.00% 종류 C1, C2: 해당사항 없음	수익증권 취득시	판매회사 취득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자산운용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70%	매 3개월 후급 및 투자신탁의 전부해지시
	판매회사 보수	종류 A : 순자산총액의 연 0.90%	
		종류 C1 : 순자산총액의 연 1.90%	
		종류 C2 : 순자산총액의 연 0.00% (별도 부담)	
수탁회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9%		

일반사무관리 보수	순자산총액의 연 0.0125%	사유발생시 지출
기타비용	순자산총액의 연 0.02%	
총 보수 · 비용비율 (기타비용 미포함)	종류 A: 순자산총액의 연 1.7025% 종류 C1: 순자산총액의 연 2.7025% 종류 C2: 순자산총액의 연 0.8025%	
총 보수 · 비용비율 (기타비용 포함)	종류 A: 순자산총액의 연 1.7225% 종류 C1: 순자산총액의 연 2.7225% 종류 C2: 순자산총액의 연 0.8225%	

※ 기타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 또는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의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추정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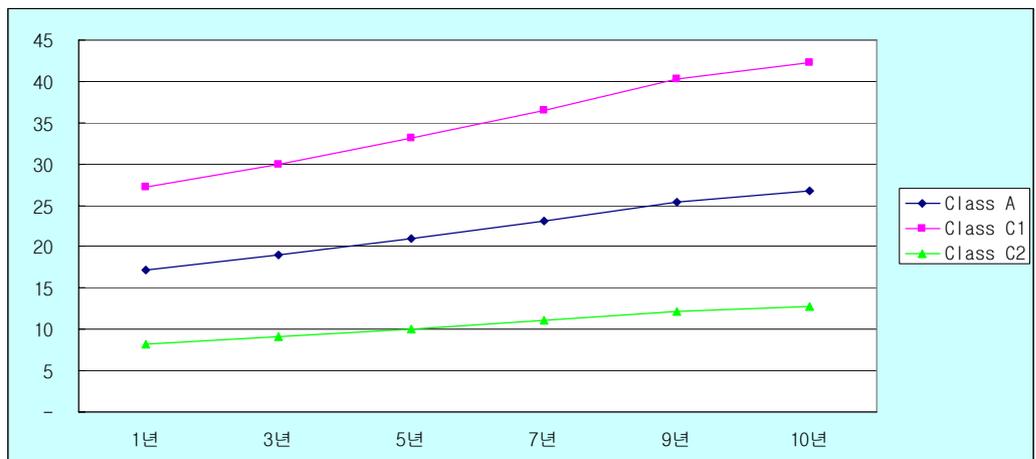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만원)

투자기간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종류 A	17.23	18.99	20.94	26.72
종류 C1	27.23	30.02	33.09	42.23
종류 C2	8.23	9.07	10.00	12.76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기간별 투자자 부담 비용 추이>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 \text{환급비율}$$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 - 국내비과세소득)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이면, 환급비율 < 0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이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2007년 6월 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년 6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수익자는 투자신탁이 투자한 투자대상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2007. 6. 1. 현재 개인 15.4%, 법인 14.0%)을 부담합니다. 다만, 상장주식,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장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거래에서 받

생되는 매매·평가차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매 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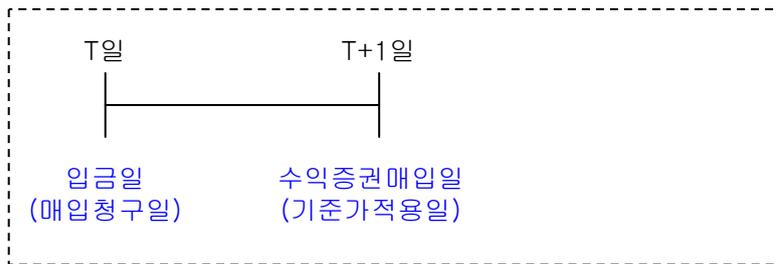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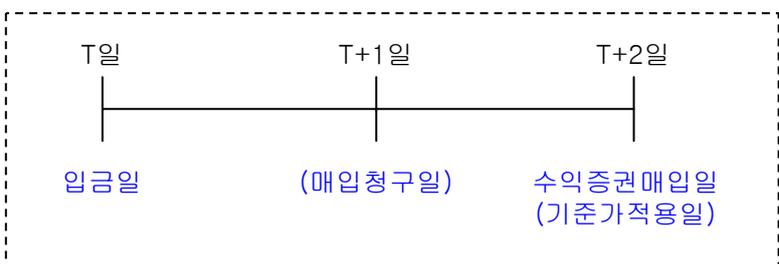
(가) 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 (23 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 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구 분	T	T+1	T+2	T+3	T+4	T+5	T+6	T+7	T+8
환매청구	당일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오후 5시 이전	환매 청구			기준가 적용				환매금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구 분	T	T+1	T+2	T+3	T+4	T+5	T+6	T+7	T+8
환매청구	당일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 청구				기준가 적용				환매금 지급

※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시점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3)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 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	--	--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간접투자증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매입 또는 환매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을 환매를 청구한 시간으로 보며, 이는 판매회사의 Main 컴퓨터에서 인지·처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투자자의 개별적인 매입·환매청구 없이 주기적으로 매입·환매 처리되는 자동이체 연결계좌에 대해서는 매입 및 환매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52조의2제3항)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 환매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 (23~24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 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②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 이익 등의 분배 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 (24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 전략

	투자대상	투자비율	구체적인 주요 투자대상
①	인프라 주식 모투자신탁	70% 이상	해외주식에의 투자 : 60% 이상 채권/어음에의 투자 : 40% 이하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운용할 수 있다.

※ 모투자신탁의 세부적인 투자전략은 제5부의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
기 바랍니다.

2. 투자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
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
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
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펀드의 수익구 조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신탁재산을 <u>주식, 모투자신탁 등에</u>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 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 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 니다. <u>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대상국의 경제 및 증시상황의 변화와 당해 기업의 영업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섹터(Sector)에 투자하므로 전체시장 투자 대비 수익률 괴리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u>
파생상품 투자위험	<u>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 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 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u>

추적오차 위험	이 펀드는 목표로 하는 Index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운용되는 Passive형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운용하므로 펀드의 설정규모 및 투자 제반 여건 등의 요인으로 인덱스가 완전히 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벤치마크 Index와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p>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투자대상인 모투자신탁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이상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헷지합니다. 단, 이종통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해당 통화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또한 미달러화 헷지시에도 만기 불일치로 인해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원달러환율 선물계약의 만기는 투자신탁만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기간을 위한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때의 시장 환율 및 선도환 프리미엄 수준에 따라 환위험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투자수익 부분은 투자신탁 설정단계에서는 환 위험 헤지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수익이 실현되어 국내 통화로 환전되는 시점에서 환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p> <p>당 펀드가 추가형/개방형으로 설계되어 환매 및 추가설정에 따라 소액의 입출금이 있을 경우 부분적으로 환위험 헤징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헤징 가능 시점에 따라 일정기간 환위험 헤징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p>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현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기타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투 자 대 상

※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투자대상		투자비율	구체적인 주요 투자대상
①	인프라 주식 모투자신탁	70% 이상	해외주식에의 투자 : 60% 이상 채권/어음에의 투자 : 40% 이하
②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단,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이하로 운용할 수 있다.

4. 투 자 제 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예외
이해관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

인에의 대출	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 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수익증권에의 투자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외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등 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II. 자산의 평가

1.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 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평가 방법
외국간접투자 증권(상장주식, 상장채권 등)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거래되는 외국시장의 최종시가로 평가
비상장 외화표시 유가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상장주식 및 코스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자산유동화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 격
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 격
장내파생상품	해당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단, ELW의 경우 발행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단,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 증권은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 가
외화표시 자산을 한국원화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 근거래일의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

환산하는 환율	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음. 단, 외국환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음
---------	--

※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1. 중개회사의 선정 기준

구 분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간접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거래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선정절차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각 자산별로 매매위탁가능 중개회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중개회사는 월간 또는 분기 중개회사의 평가를 통하여 교체 가능하다.
	③중개회사의 평가 - 거래 중개회사에 대한 평가는 각 자산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주기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자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를 부여한다. - 중개회사의 평가자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고, 각 팀의 평가 결과는 담당 본부장에게 보고한다. - 매매담당부서는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자산별 적용기간의 매매위탁 배분계획을 세우고 전결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내파생 상품거래	<투자증권 거래와 같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조건

종류	종류 A	종류 C1	종류 C2
종류별 가입조건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	제한 없음	일임형종합관리계좌를 보유한자,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간접투자기구

※ 각 종류간에는 전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영업일 전일(17시[오후5시] 이후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 또는 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 부분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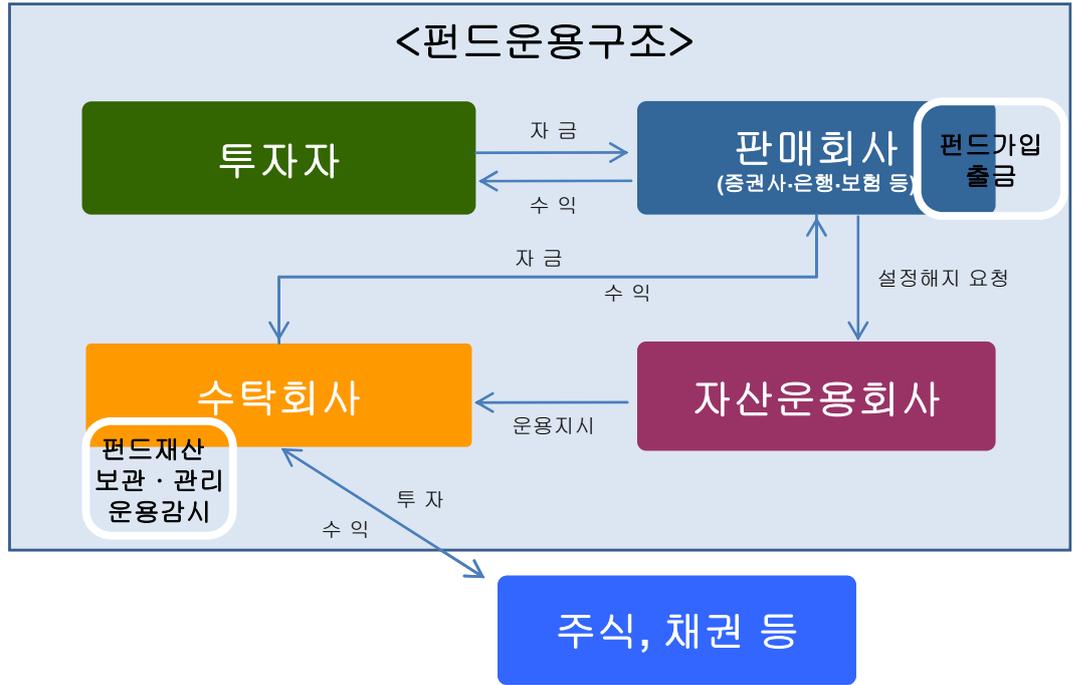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 펀드운용구조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산은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HP B/D 4층 (☎02-3774-8043)

2. 주요 업무

(1) 자산운용회사의 주요 업무

투자신탁의 설정·해지/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투자신탁 재산의 운용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 ①(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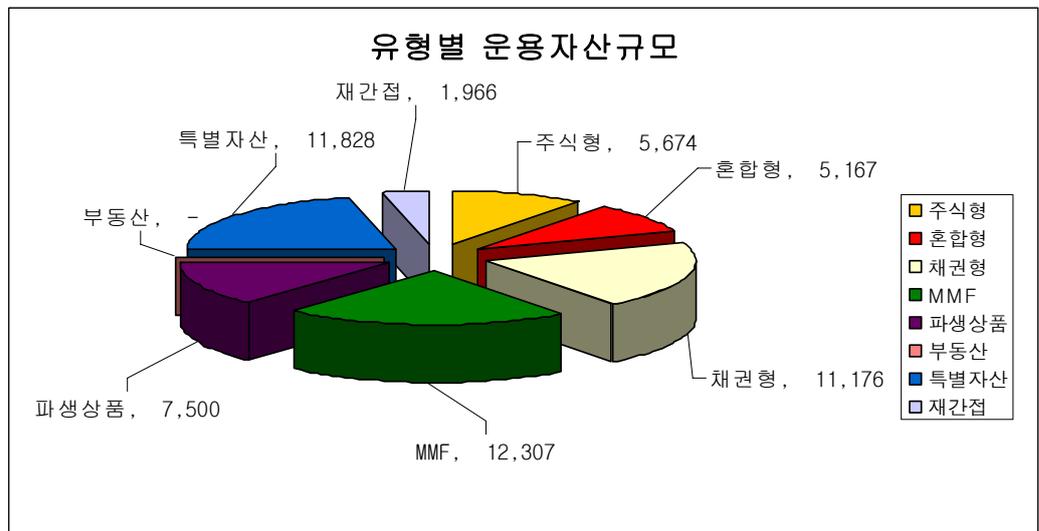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07.03.31	08.03.31	항 목	07.03.31	08.03.31
유동자산	60,166	65,254	영업수익	9,068	12,185
고정자산	4,109	2,893	영업비용	5,661	7,070
자산총계	64,275	68,147	영업이익	3,407	5,115
유동부채	6,952	6,998	영업외수익	79	12
고정부채	152	282	영업외비용	11	5
부채총계	7,104	7,280	경상이익	3,475	5,121
자본금	38,895	38,895	특별이익	-	-
자본잉여금	6,529	6,529	특별손실	-	-
이익잉여금	11,747	15,443	세전순이익	3,475	5,121
자본조정	0	0	법인세비용	964	1,425
자본총계	57,171	60,867	당기순이익	2,511	3,696

4. 운용자산규모

(2008년 9월 22일 기준, 단위: 억좌)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합 계
5,674	5,167	11,176	12,307	7,500	-	11,828	1,966	55,618



5.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성명	나이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김상훈 (**)	37세	26개	4,867억원	산은자산운용 해외투자팀 팀장 대한투자증권 기업금융부 하나증권 채권금융부

※ 당해 투자신탁은 팀 체제로 운용(팀운용)되며, **로 표시된 운용인력은 해당펀드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자산운용협회에서 추가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상기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자산운용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dbasset.co.kr),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 연혁
대우증권(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 - ☎1588-3322 - 홈페이지: www.bestez.com	1970.09 설립
한국산업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 ☎1588-1500 - 홈페이지: www.kdb.co.kr	1954.04 설립
HMC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3 - ☎02-3787-2114 - 홈페이지: www.hmcib.com	2008.04 HMC투자증권(주)로 상호 변경
키움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 ☎1544-9100 - 홈페이지: www.kiwoom.com	2000.05 증권투자서비스 개시
리딩투자증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36-1 - ☎02-2009-7000 - 홈페이지: www.leadingkorea.com	2000.03 설립
한국투자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 ☎1544-5000 - 홈페이지: www.truefriend.com	2005.06 동원증권과 한투증권의 합병
하나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 ☎1588-1111 - 홈페이지: www.hanabank.co.kr	1991.07 개업

교보증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02-3771-9399 - 홈페이지: www.iprovest.com	1994.04 교보증권으로 상호 변경
(주)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 ☎1588-9999 - 홈페이지: www.kbstar.co.kr	2001.01 국민·주택 합병은행, 국민은행으로 새출발

2. 주요 업무

(1) 판매회사의 주요 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업무
- 각종 장부·서류 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①(의무)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게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Ⅲ.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02-2073-7114)
회 사 연 혁	2001년 01월 국민·주택 합병은행, 국민은행으로 새출발

2. 주요 업무

(1) 수탁회사의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 및 책임

(의무)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수탁회사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 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HSBC펀드서비스㈜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02-3771-9834)
	회 사 연 혁	2000년 05월 에이엠텍 설립등기

2. 주요 업무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KIS채권평가	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한국화재보험협회 건물 4층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 한섬빌딩 6층

2.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	--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 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년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탁회사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자산운용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kdbasset.co.kr)를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1회 이상 공고
-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서류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광고하는 때에는 서울경제신문에도 광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 없이 자산운용회사(www.kdbasset.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 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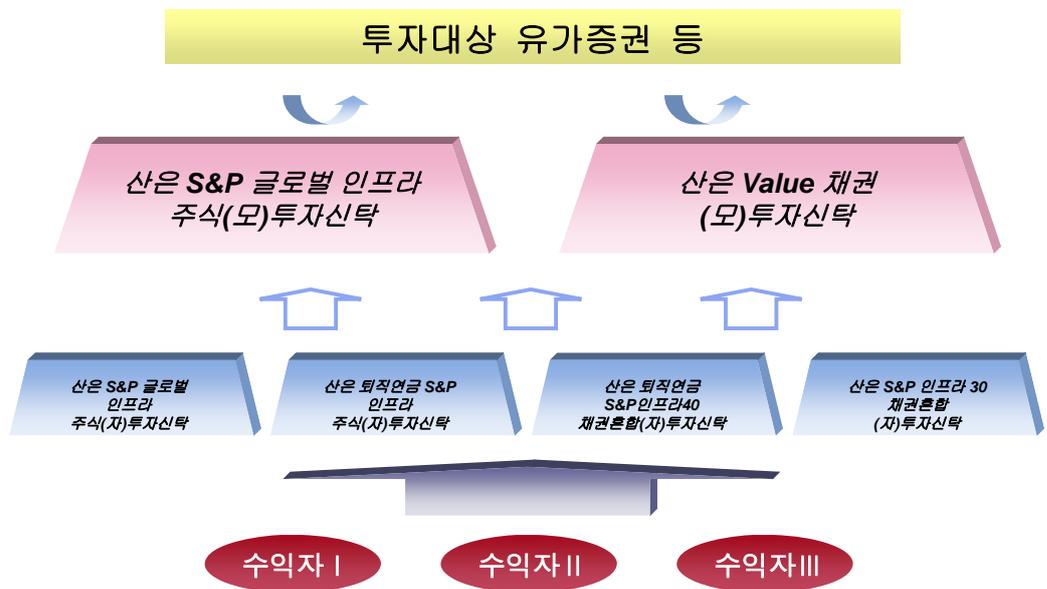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고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5부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I.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주식 모투자신탁

I. 투자신탁의 개요

- | | |
|------------|--|
| 1. 명 칭 |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주식 모투자신탁 (펀드코드: 67493) |
| 2. 신탁계약 기간 |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
| 3. 분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공모형, 모자형/모투자신탁 |



- | | |
|-----------|---|
| 4. 자산운용회사 | 산은자산운용주식회사 |
| 5. 최초 설정일 | 2007. 04. 11 설정
2007. 04. 27 약관 변경(자투자신탁 신설) |

II. 투자정보

- | | |
|----------|---|
| 1. 투자 목적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편입된 글로벌 인프라자산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함으로써 비교지수 수익을 추종합니다.

<u>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중도 환매시 또는 편입자산의 가치하락 등으로 인하여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u> |
| 2. 투자 전략 | 장기 고성장이 전망되는 전세계 인프라 관련 상장주식에 주로(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

한편 해외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은 원칙적으로 해외투자 포지션 USD(\$)환산평가액의 90% 이상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헷지합니다. 단, USD(\$) 대비 이종통화 포지션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해외유가증권 투자전략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고자, 장기 고성장이 예상되는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편입된 전세계 인프라 관련 상장주식 및 DR(주식예탁증서) 등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개요

■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란?

- 전 세계 시장을 대표하는 75개 상장 인프라 주식 포트폴리오
- 에너지인프라, 교통인프라, 유틸리티 등 세가지 섹터로 구성
- 선진국 시장 및 이머징 마켓의 인프라 주식 가격 및 배당 반영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에너지인프라

- 석유, 가스 저장 및 운반 시설

교통인프라

- 공항 서비스
- 고속도로, 철도
- 항만 시설,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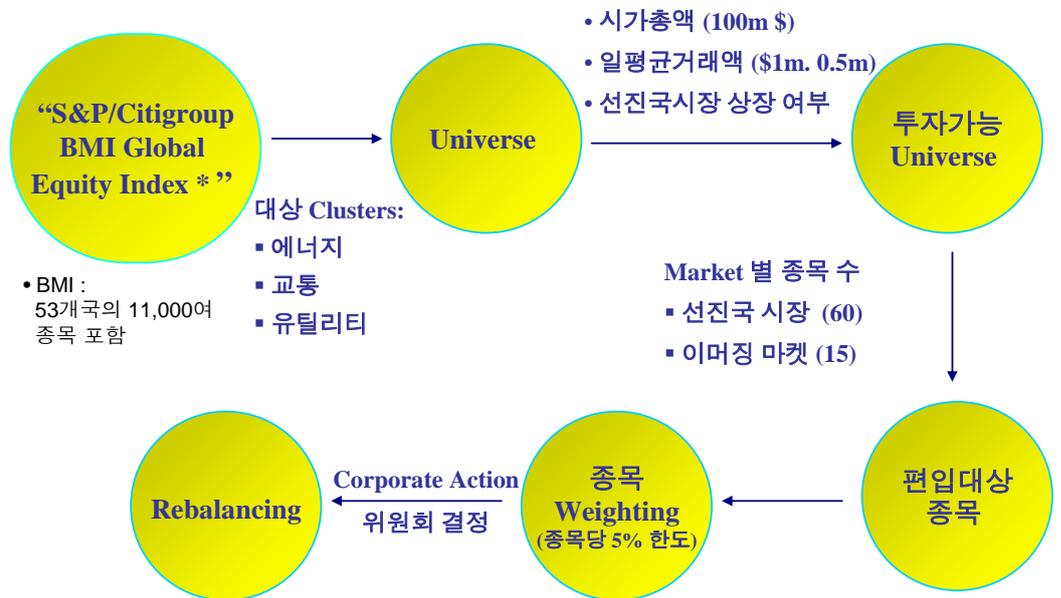
유틸리티*

- 전기 유틸리티
- 가스 유틸리티
- 복합 유틸리티
- 수자원 유틸리티

* 유틸리티란 수도, 가스, 전력회사 등처럼 사회기반 시설을 관리하면서 사용요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함

■ 포트폴리오 관리 및 편입

- 신탁재산의 90% 수준에서 글로벌 인프라 관련 주식에 투자
-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종목을 지수비중에 맞추어 편입 -> 지수내 종목교체 및 주식분할 등 개별 비중변동 요인 발생시 또는 추적오차 과도시 리밸런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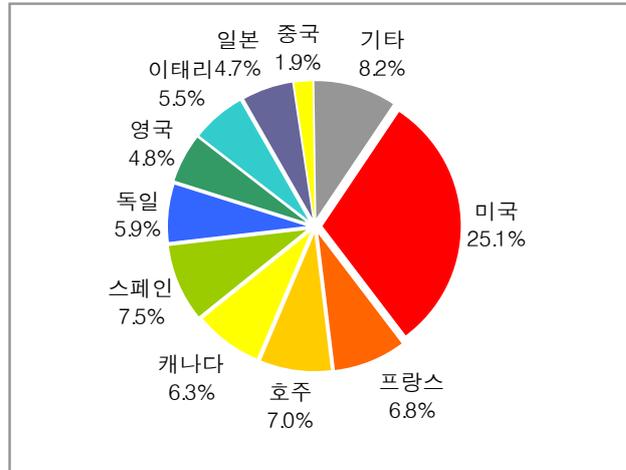


■ 벤치마크

- 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 × 90% + Call × 10%

■ 포트폴리오 구성

<국가별 투자비중>



<섹터별 구성비율>

(단위:백만,%)

섹터	평가액	비중
전기	9,043	32.5%
파이프라인	5,130	18.5%
상업서비스	4,754	17.1%
건설	1,748	6.3%
교통	854	3.1%
지주회사	434	1.6%
워터	361	1.3%
가스	327	1.2%
항공/기계	203	0.7%
기타	259	2.8%
합계(순자산대비)	23,112	85.0%

<Top10 보유종목>

(단위:백만,%)

종목명	국가	평가액	비중
TRANSCANADA CORP	캐나다	1,118	4.02%
SPECTRA ENERGY CORP	미국	1,079	3.88%
E.ON AG(NEW)	독일	1,022	3.68%
WILLIAMS COS INC	미국	992	3.57%
SUEZ-LYONNAISE DES EAUX	프랑스	914	3.29%
ENBRIDGE INC	캐나다	894	3.22%
ABERTIS INFRAESTRUCTURAS SA	스페인	817	2.94%
AUTOSTRADA SPA	이태리	812	2.92%
EL PASO CORP COM USD3	미국	683	2.46%
IBERDROLA SA	스페인	648	2.33%
합계(순자산대비)		8,979	24.59%

기준일: 2008.09.22

상기 포트폴리오 종목 및 비중은 시장상황 및 운용전략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헤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외화자산의 경우, **순자산평가액의 90% 이상 [USD(\$) 환산평가액 기준] 환헤지를 실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용은 목표헤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의 기본목적은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환율변동위험 헷지

- 목표 환헷지비용: 신탁재산의 90% 이상 **[USD(\$) 환산평가액 기준]**
- 원칙적으로 해외투자 포지션의 USD(\$)환산평가액의 90% 이상에 대해 원/USD통화선물을 통해 헷지. 단, USD 대비 이종 통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하지 않으므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기 환헤지 비율은 작성일 당시의 목표 환헷지 수준으로서 실제 운용상 환헷지비용과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에서는 환헤지의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Disclaimer

“Standard & Poor’s®”, “S&P®”, “S&P Global Infrastructure®”는 McGraw-Hill, Inc. 의 등록상표이며, 산은자산운용(주)에 의한 사용이 허가되었습니다. McGraw-Hill Companies, Inc. 의 일부인 Standard & Poor’s (“S&P”)는 본 예금상품을 보증, 지지, 판매 또는 판매 촉진하지 아니합니다. S&P는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또는 특히 본 상품에 대한 투자의 적부 및 S&P 지수가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성과를 반영하는 능력 등에 관하여 본 상품의 투자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장 또는 진술도 하지 아니합니다. S&P와 라이선스 이용자 사이의 유일한 관계는 “(가) S&P의 특정 등록상표와 상호, 그리고 (나) 라이선스이용자 또는 본 상품과 무관하게 S&P가 결정, 구성, 계산하는 S&P지수를 라이

센스”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S&P는, S&P지수를 결정, 구성 또는 계산함에 있어서 라이선스이용자 또는 **본 상품의 투자자의** 필요를 고려할 의무가 없습니다. S&P는 **본 상품의** 가격, 수량 또는 그 시기의 결정 또는 **본 상품**을 현금으로 환산하는 산식의 선정 또는 계산에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에 참가한 바도 없습니다. S&P는 **본 상품의** 관리, 마케팅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무 또는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P는 S&P지수 또는 이에 포함된 여하한 자료의 정확성 및/또는 완벽성에 관하여 보장하지 아니하며 이의 오류, 누락 또는 중단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P는 S&P지수 또는 이에 포함된 자료의 사용으로부터 라이선스이용자, **본 상품의 투자자** 및 기타의 개인 또는 기관이 얻는 결과에 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장 또는 진술도 하지 않습니다. S&P는 S&P지수 또는 이에 포함된 여하한 자료에 대하여 그 시장성 또는 특정 목적 또는 특정 사용에의 적합성에 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보장에 대한 책임을 이에 명시적으로 부인합니다. 상기 사항에 더하여, S&P는 비록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손해, 징벌적 배상, 간접손해 또는 파생적 손해 (일실이익 포함)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①	해외주식	60% 이상	법 제2조제7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화증권 중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되어 거래되는 주권, 주식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S&P Global Infrastructure Index에 편입된 종목에 한한다) (이하 “해외주식”이라 한다)
②	채권	40%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 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하 “자산유동화 증권”이라 한다)
④	어음	40% 이하	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채무증서 또는 증권 거래법시행령 제 2 조의 3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이상 인 것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⑤	금리스왑 거래	100% 이하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u>100% 이하</u> 가 되도록 한다.
⑥	수익증권	5% 이하 (약관상 단서조항 20%, 30%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u>해외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인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u> (이하 “수익증권 등”이라 한다)
⑦	투자증권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투자증권의 대여
⑧	장내 파생상품	15% 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 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u>통화선물 및 통화옵션(이와 유사한 상품으로서 법시행령 제 8 조에 의거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포함한다)</u>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⑨	환매조건부 채권 매도	50% 이하	-
⑩	장외 파생상품	10% 이하	<u>법 제 2 조제 9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거래되는 거래로서 환율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선도환거래</u>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⑪	은행계정대		법시행령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⑫	단기대출, 금융기관에 의 예치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p>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⑤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⑤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p>			

4. 투자위험

※ 투자위험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9~20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자산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기준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영업소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상기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 참조) 산은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www.kdbasset.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 자산평가는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I. 자산의 평가’ (21~22쪽)에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수익자 총회에 관한 사항 등

(1) 의결사항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② 수탁회사의 변경
- ③ 신탁기간의 변경
-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⑤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⑦ 주된 투자대상의 변경
- ⑧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2) 수익자 총회의 소집

- ①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을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④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

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3) 수익자 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②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4) 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자산운용회사는 각 자투자신탁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투자신탁 수익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에 비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5) 연기수익자총회

①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6)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①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신탁기간의 변경 기타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사항에 관한 신탁약관의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전에 당해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약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용어	내용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 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 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 옵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 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 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 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간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헤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산은 S&P 글로벌 인프라 주식 자투자신탁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신탁 명칭 : _____

판매 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 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환율변동위험 포함) 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